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번호	554
------	-----

2015. 6. 30.
기획경제위원회

I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년 6월 12일, 성백진의원(찬성의원 11명)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6월 17일

다. 상정결과 :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61회 정례회】

-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(2015. 6. 30)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토론, 의결(수정안가결)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성백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‘재계약’적격자 심의의 경우, 기존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한 번 더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심사한다는 것이므로, 공개모집 기준과는 다르게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·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

등이 주요하게 측정될 수 있는 차별적 평가기준이 필요함.

- 그러나, 현행 조례에는 재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심사기준 규정이 미비하고, 수탁기관에 대한 현행의 지도·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면에서도 재계약 적격자심사 기준과의 연계성이 취약함.
-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재계약 적격자 심사기준에 최근 수탁기간 동안의 지도·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, 그 밖에 회계 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배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재계약 적격자 심사에 대한 그 실효성을 높이고,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수탁기간 동안의 성과 및 실적에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여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,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지도·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함(안 제12조제2항 신설).
- 재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및 배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12조제3항 신설).

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윤병국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개정안은 기존의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 위탁기간 동안의 지도·점검 결과, 종합성과평가, 회계감사 결과 등을 반영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강제해 재계약 적격자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민간위탁의 효과성을 신장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민간위탁 추진 현황

- 민간위탁은 정부가 생산하여 공급하던 공공서비스를 정부 대신 민간기관이 소비주체인 주민에게 공급하는 형태를 의미하며, 주로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예산절감에 대한 기대 등으로 1980년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되었음.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2조는 민간위탁을 각종 법령 및 조례, 규칙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.
- 현재 서울시(이하 “시”)는 364개 각종 사무를 민간위탁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, 2015년 민간위탁 예산은 1조 632억원 수준임¹⁾.

- 최근에는 민간위탁 사업의 확대보다는 민간위탁 사업이나 예산의 규모가 과다하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, 민간위탁 사업의 효과성이나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음.
- 실제로, 지난 2014년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무화, 수탁기관 선정기준 보완, 지도점검 및 종합성과평가의 수행, 회계감사 의무화 등 행정효율성 향상과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음.

다. 민간위탁 재계약 적정성 판단절차 강화(안 제12조제2항 및 3항)

- 개정안은 안 제12조제2항과 제3항의 신설을 통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 판단과정에서 지도·점검 및 종합성과평가 결과,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,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과 배점을 규칙으로 정해 재계약 판단의 임의성을 극복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음.
- 현재 민간위탁 사무의 재계약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,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,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최종결정되며, 시는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통해 재계약 적정성을 심사하는 각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적정성 심사기준을

1) 2015년 3월 기준.

마련하고 있으며,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.

- 따라서, 안 제12조제2항의 신설은 재계약 적정성 판단과정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, 실제 업무수행 절차와도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.

〈그림〉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절차

구 분	재계약
사전조사 (주관부서)	민간위탁 계속필요성, 공개경쟁가능성, 수탁가능업체, 재계약 여부 등 사전 조사
↓	↓
추진계획 (주관부서)	위탁사무 내용, 기간, 비용, 수탁자 선정방법 등
↓	↓
재계약 적격자 심의 (주관부서)	적격자 심의위원회 ▶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
↓	↓
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(조직담당관)	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▶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
↓	↓
의회보고 (주관부서)	상임위 보고
↓	↓
계약심사 등 (계약심사과/ 법률지원담당관)	비용 심사 (계약심사과) 협약서 심사 (법률지원담당관)
↓	↓
계약체결 (주관부서)	위탁 협약 체결
↓	↓
사후관리 등 (주관부서/ 조직담당관)	지도점검, 종합성과평가 등

- 다만, 안 제12조제3항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과 배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치는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대한다는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, 실제 민간위탁 사무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심사기준을 제시하기 곤란하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.
- 이와 관련해 시는 현재 지침을 통해 심사기준의 표준안을 제시하고, 각 부서는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을 반영해 심사기준을 탄력적으로 변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업무의 성격이 각기 상이한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과 배점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자 함.

나. 수정 주요골자

-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과 배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 삭제

Ⅶ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

(재적위원 12명, 참석위원 7명, 전원찬성)

Ⅷ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Ⅸ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554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년 6월 30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업무의 성격이 각기 상이한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과 배점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이를 삭제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과 배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 삭제(안 제12조제3항 삭제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- 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2조(재계약)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	제12조(재계약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	제12조(재계약) ① <개정안 과 같음>
<신설>	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, <u>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 평가 결과,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	② <개정안과 같음>
<신설>	③ <u>제2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성 심사 기준 및 배점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	③ <삭제>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,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,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재계약)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</p>	<p>제12조(재계약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, <u>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·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,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